

# 아사히그룹 인권 원칙

아사히그룹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자부심과 ‘훌륭한 맛을 제공하고 삶을 더욱더 즐겁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전 세계 직원의 열정으로 뭉친 글로벌 기업 그룹입니다. 일본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전통을 지키고 있으며, 특히 지구 및 지역사회와의 지속 가능한 관계에 특히나 중점을 두고 사업을 발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사히그룹 인권 원칙(이하 ‘본 원칙’)은 모든 사업운영의 근간이 되는 요소입니다. 본 원칙은 아사히그룹 철학, 아사히그룹 행동규범 및 아사히그룹 지속가능성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아사히그룹 내의 기타 모든 인권 관련 정책을 지배합니다.

본 원칙은 각 아사히그룹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sup>1</sup>. 또한 우리 회사의 공급자를 포함한 모든 협력업체가 본 원칙을 인정하고 준수할 것을 권장하며, 이를 통해 우리회사의 사업운영에 있어서 인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아사히그룹홀딩스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아사히그룹 산하 모든 회사가 당사의 인권 공약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공약을 이행하여 그 실천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인권 존중 약속

우리회사는 연구 개발과 조달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사업 활동이 환경 및 인권에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또한 기후 변화, 대기, 토양 및 물 오염과 같은 요인으로 인한 생물 다양성의 손실은 모든 인권의 실질적인 향유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당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제인권장전<sup>2</sup>에 규정된 인권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sup>3</sup> 속 기본권과 관련된 원칙을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sup>4</sup>에 따라 기업 활동을 통해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차별, 빈곤 등의 사회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사는 깨끗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이용할 권리를 존중할 것입니다. 아사히그룹홀딩스주식회사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하였으며 그 10 가지 원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했습니다.

우리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사업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을 준수할

<sup>1</sup> 유엔인권이사회가 2011년 승인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사업적 맥락에서 인권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권위 있는 세계 표준을 제공하여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기대하는 바를 명확히 합니다.

<sup>2</sup>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다음의 세 가지 인권 문서를 일컫습니다. 세계인권선언과 그에 상응하는 두 개의 국제조약, 즉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 문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공통 기준으로 간주하며 보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제시합니다.

<sup>3</sup> 국제노동기구(ILO)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은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노동기준으로써,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고용과 직업의 차별 철폐,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등 기본권에 관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sup>4</sup> 유엔인권이사회가 2011년 승인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사업적 맥락에서 인권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권위 있는 세계 표준을 제공하여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기대하는 바를 명확히 합니다.

것입니다. 국제 인권이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과 규정 또는 집행에 의해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을 때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원칙을 존중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더욱이 인권 옹호자에 대한 위협, 협박, 신체적 또는 법적 공격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인권 실사 약속

우리회사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회사의 사업 운영과 관련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해 실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회사는 우리회사의 운영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우리회사의 공급업체 및 기타 사업 파트너를 포함한 다른 협력 당사자의 행동을 통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회사는 당사가 이러한 침해를 초래했거나 기여했다고 파악하면, 사업 파트너와 협력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고 향후 유사한 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회사는 인권옹호자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와 사업운영 관련 인권문제를 적시에 공유하고, 상호 교류하면서 진정성 있게 참여하며,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우리의 이니셔티브에 반영할 것입니다.

### 사업과 관련된 인권 문제

우리는 인권 실사를 통해 우리회사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두드러진 인권 문제가 다음과 같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 차별: 우리는 다양성, 평등과 포용(DE&I)을 장려하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적, 인종, 민족성, 종교, 이념, 성별, 나이, 장애, 성적 지향, 성적 지향,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고용 상태 또는 국가/지역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정의된 기타 보호되는 특성에 따라 차별하거나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 괴롭힘: 타인에게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괴롭힘은 행위, 단어 사용 또는 참여를 금할 것을 약속합니다.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우리는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현대노예도 금합니다. 우리는 아동, 여성, 이민자 노동자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글로벌 콤팩트의 원칙과 다른 국제 인권법적 출처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아동의 권리와 기업 원칙",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및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우리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을 존중할 것입니다.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이 우리가 사업하는 국가 및 지역의 국가/지역 법령 및 규제에 따라 제한되거나, 그러한 제한이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종업원과 대안 대화수단을 마련하여 이러한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산업보건 및 안전: 우리는 우리 직장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법과 규정 및 그 시행 현황에

대해 계속 소식을 전할 것이며,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근로시간 및 임금: 사업하는 국가 및 지역의 근로시간에 관한 국제기준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직원의 과로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하는 국가 및 지역의 임금과 관련된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입니다. 각 국가의 법규에 따라 최저임금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공정임금을 달성할 것입니다.
- 공급망 내 영향: 우리회사는 사업 파트너 및 그 하청업체를 포함한 공급망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회사는 공급업체가 본 원칙에 부합하는 표준을 준수하고 해당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및 평가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공급망 전반의 인권 존중을 촉진할 것입니다.
- 지역사회 내 영향: 우리회사는 우리의 사업 운영이 토지권, 물 이용성, 건강 및 원주민의 권리와 같은 지역사회 내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원주민의 권리향상을 위한 유엔의 선언문을 존중하며, 토지(구매, 임대 또는 사용 포함)를 취득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협상을 통해 IFC 수행 표준의 관련 부분과 일치하며, 자유롭고 사전에 정보가 충분히 제공된 동의(FPIC) 원칙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하는 지역사회에서 인권 책임을 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고충처리제도**

우리회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 및 지역의 관련 법규나 내부 정책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목격했거나 의심하는 직원은 상사에게, 또는 당사 내부 핫라인/내부 고발 시스템을 통해 우려 사항을 보고하도록 장려합니다. 또한 아사히그룹의 외부 이해관계자가 본 원칙에 반하는 위반 사항이나 행동을 알릴 수 있는 조희 시스템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회사가 제공하는 것 이외의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해 사법적 또는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에 참여할 것이며, 잠재적 인권 영향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사법적 또는 비사법적 제도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회사는 우리의 사업운영에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지역사회에 대해 사내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사법적 또는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청하지 않으며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비밀유지 조항(예: 비밀유지 계약)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선의로 우려를 표명하거나 우리회사의 조사에 협조하는 자에 대한 어떠한 보복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 및 통지는 아사히그룹 사업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당사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 신뢰를 강화합니다.

### **인지 제고 및 교육**

전 아사히그룹에서 본 원칙을 이행하고 준수하기 위해 우리는 사업을 운영 중인 국가와 지역에서 본 원칙을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모든 임직원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려고 할 것입니다.

### **모니터링 및 보고**

우리는 본 원칙의 이행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필요에 따라 개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웹사이트, 통합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본 원칙의 진행 상황을 공개할 것입니다.

본 원칙은 2023년 12월 8일 아사히그룹홀딩스(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3년 12월 8일

가츠키 아츠시  
President and CEO, Representative Director  
Asahi Group Holdings, Ltd.